

#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5월 6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5. 20) 상정
-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5. 20) 원안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윤 인 상)

가. 제안이유

-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peed One-Stop Solution)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장은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기업지원업무담당부서 안에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함.  
(안 제3조)
-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함.  
(안 제4조)
-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을 구성·운영

하며, 지원단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 및 처리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함.

(안 제5조)

- 시장은 필요 시 기업애로사항 원스톱 처리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의 주재는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함.

(안 제7조)

- 유관기관의 참여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평가·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회의참석 수당의 지급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부터 제13조까지)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0호
의결일	2008. 5. 23
년월일	(제143회)

제출년월일 : 2008. 5. 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peed One-Stop Solution)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시장은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 안에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지원단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 및 처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함.(안 제5조)
- 라. 시장은 필요 시 기업애로사항원스톱처리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의 주재는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업 지원업무담당과장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함.(안 제7조)

바. 유관기관의 참여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평가·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 회의참석 수당의 지급, 비밀누설의 금지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부터 제13조까지)

##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스오에스(SOS: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본사의 주소 또는 생산시설이 부천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되는 기동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사항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처리회의”라 한

다)란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찾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  
업지원업무담당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전담조직으로 설치한다.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  
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  
여 운영한다.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원단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처  
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제6조(원스톱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스톱처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스톱처리회의는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  
지원업무담당과장이 주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제7조(기업 애로사항의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  
넷·전화상담 및 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및 원스톱처리회의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등)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 관련 정보의 공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단 워크숍, 기업애로사항의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고·평가 등)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의 발굴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연 2회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확보)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